



보도 일시	2022. 12. 14.(수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14.(수) 10:00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	책임자	과 장 최원봉 (044-204-3271)
		담당자	사무관 안주훈 (044-204-3287)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- 2023. 1. 1.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-

□ 현금영수증 제도는 '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¹⁾로 '21년 발급금액²⁾이 142.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.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- 1) 의무발행업종(개) : ('10년) 32 → ('21년) 87 → ('22년) 95 → ('23년) 112
- 2) 발급금액(조 원) : ('05년) 18.6 → ('10년) 76.0 → ('21년) 142.0 → ('22년 11월 말) 140.9(잠정)

○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,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 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
□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'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(17개, 약 49만 명)을 알려드립니다.

-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
 -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라요업제품 소매업 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 행정사업 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에 한정)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 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 구두류 제조업
 -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* ⑰ 기타 통신판매업*
- 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

□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'23. 1. 1.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
○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%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.

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

-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.
-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'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.
- '10년부터 전문직·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*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,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
* ('10년) 건당 30만 원 → ('14년 7월 이후) 건당 10만 원

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

- '23. 1. 1.부터 아래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.
 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)으로서 '23년에 추가되는 17개 업종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<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>

업종명	업종 정의(국세청 업종코드)
가전제품 수리업	·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4)
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	·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5)
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	·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3361, 523363)
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·요업제품 소매업 ¹⁾	· 각종 식탁용품,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3332)

1) 거울 및 액자·주방용유리제품 관상용 어항 소매업(523422)은 '16. 7. 1. 의무발행업종으로 기지정

업종명	업종 정의(국세청 업종코드)
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	·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(505001)
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	·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3940)
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	·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, 음향 기기, 통신 기기,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(524092)
행정사업	·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(741109)
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(부품판매업에 한정)	·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(504002)
여자용 겹옷 제조업	·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, 예복, 재킷 슈트, 바지 등 겹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(181105, 181206)
남자용 겹옷 제조업	·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, 예복, 재킷 슈트, 바지 등 겹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(181101, 181205)
구두류 제조업	· 가죽, 합성가죽,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, 재생가죽, 합성가죽,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(192001)
시계,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	· 시계,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9)
가죽, 가방 및 신발 수리업	· 각종 가정용 가죽, 가방,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(922108)
숙박 공유업	·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(551007)
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²⁾	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(525103, 525105)
기타 통신 판매업 ²⁾	·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(525102)

2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

-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'23. 1. 1.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

-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-000-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- 참고로,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*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* 접근경로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> 조회/발급 > 현금영수증 발급 >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

-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3 **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**
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(010-000-1234)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,
-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%가 감면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>

- (사례㉠)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
- (사례㉡)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- (사례㉢)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,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,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
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

-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(부가가치세 포함)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,
 - 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*,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※ 신고경로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> 상담/제보 >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제보 >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
-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포상금*을 지급하고,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* 포상금 지급 한도 : 건당 50만 원, 연간 200만 원

5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

-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*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 - * 현금영수증 발급금액(조 원) : ('05년) 18.6 → ('20년) 123.0 → ('21년) 142.0 → ('22년 11월말) 140.9(잠정)
-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
 -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.

- 【붙임】 1.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
2.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
3. 자주 묻는 질문

붙임 1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)

발급의무 시작일	구분	업종
2010. 4. 1.	32개 업종 신규 지정	·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건축사, 법무사, 심판변론인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 ·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일반의원, 기타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 · 일반교습학원, 예술학원,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, 음식점,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자문업
2010. 7. 1.	4개 업종 추가	· 공인노무사업, 일반유희주점, 무도유희주점, 산후조리원
2014. 1. 1.	12개 업종 추가	·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, 운전학원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교육 목적),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, 피부미용업,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 관리업, 마사지업(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),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),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,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, 의류임대업, 포장이사 운송업
2015. 6. 2.	4개 업종 추가	· 자동차 종합수리업, 자동차전문 수리업,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, 전세버스 운송업
2016. 7. 1.	6개 업종 추가	· 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, 페인트·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거울 및 액자·주방용 유리 제품·관상용 어항 소매업, 안경 및 렌즈 소매업
2017. 7. 1.	6개 업종 추가	· 출장음식서비스업,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, 기타 스포츠교육기관,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
2019. 1. 1.	5개 업종 추가	· 골프연습장 운영업, 손·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, 악기 소매업,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
2020. 1. 1.	8개 업종 추가	· 가전제품 소매업,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, 컴퓨터학원,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, 체력단련시설 운영업, 묘지 분양 및 관리업, 장의차량 운영업
2021. 1. 1.	10개 업종 추가	· 전자상거래 소매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), 두발 미용업, 의복 소매업, 신발 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, 독서실 운영업, 고시원 운영업, 철물난방용구 소매업
2022. 1. 1.	8개 업종 추가	·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벽지·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중고가구 소매업, 공구 소매업,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자동차세차업, 모터사이클 수리업
2023. 1. 1.	17개 업종 추가	· 가전제품 수리업,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,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,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·요업제품 소매업,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, 게임용구·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,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, 행정사업,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 소매에 한정), 여자용 겹옷 제조업, 남자용 겹옷 제조업, 구두류 제조업, 시계·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, 가죽·가방 및 신발 수리업, 숙박 공유업,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), 기타 통신 판매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)

붙임 2

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

구 분	일반가맹점	의무발행가맹점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 상대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)을 영위하는 자로서 · 법인사업자 ·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)을 영위하는 사업자 * 수입금액 기준 없음
발급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 원 이상)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- (10만 원 미만) 일반가맹점과 동일
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발급거부 가산세) 거부금액의 5% *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- (과태료)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% (2회 이상 위반 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 원 미만) 일반가맹점과 동일 - (10만 원 이상)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 부과 ·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% 감경
기타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 시 · (미가맹 가산세) 미가맹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% ·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·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 시: 일반가맹점과 동일

붙임 3

자주 묻는 질문

<문1>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☞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문2>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?

☞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

다만,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문3>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?

☞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.

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(010-000-1234)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<문4>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,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,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?

☞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(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-000-1234)하면 가산세 금액의 50%가 감면됩니다.

다만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 5일 이내 자진 발급(010-000-1234)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